

목포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3년 9월 4일
- 나. 제출자 : 목포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03년 9월 26일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

-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(2003. 9. 26) : 조성평 총무국장

나. 개정이유

-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,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함.

다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(안 제2조제2항)
-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(안 제2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4. 위원회 활동

- 가.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(2003. 9. 26)
 -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답변
- 나.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(2003. 9. 27)
 - 의견개진 및 심사의결

5. 토론요지 및 지적사항

-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함은 적절한 조치임.
-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5년 감면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함.

6. 심사결과

【원안가결】
